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19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의자 : 강명구·엄태영·김용태

김정재·이성권·구자근

송언석·나경원·김상훈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장의 상담 권고,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일부 보호자의 경우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문제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 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후단 및 제68조제1항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5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5제4항 후단에 따른 상담 또는 치료를 받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p><u>없이 제18조의5제4항 후단에</u> <u>따른 상담 또는 치료를 받지</u> <u>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u> <u>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u>① (생 약)</u>	<u>② (현행 제1항과 같음)</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u>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u>③ 제1항 및 제2항-----</u> ----- ----- -----.